

## 치협 “어려운 장애인 진료해 보자” 장애인 치과진료 활성화 ‘구강보건정책’ 제안

치협은 장애인 치과 진료의 활성화를 위해선 일선 개원가 등 민간 구강진료기관에 세제혜택은 물론 요양급여비용 인상 등 인센티브가 적극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공립 및 시도별로 장애인치과병원이 설립되고 장애인 전문치과를 전공과목으로 육성해야 한다 등의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치협의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태스크포스팀이 최근 작성한 ‘장애인치과진료 활성화를 위한 구강보건정책’에 따르면 치과의 일선 개원가인 민간진료기관은 비 장애인 중심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 장애인 구강진료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협은 일정규모 이상의 구강진료기관 개설시 장애인 시설 장비 구비를 의무화 하고 바닥면적이 500 평방미터 이하의 치과의원이 시설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재정 또는 소득

공제 혜택 등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장애인 진료 시 현 건강보험 요양급여보다 200% 정도 올려야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 인상폭의 결정은 행동조절이 어려운 장애 난이도(등급)에 따라 가산율과 세제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 구강보건 장애인 진료 활성화 해법으로 치협은 ▲국공립 및 시도에 장애인치과병원을 설립하고 ▲보건소 장애인 구강보건실 확충과 인력을 확보하며 ▲이동용 구강진료 차량 확충을 제안했다.

치협은 특히 장애인 구강진료 인력양성과 관련, 치대에 장애인 치과학과 전공과정을 개설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치대와 치위생과 교과 과정에 장애인 구강진료내용을 포함하며 보수교육중 일정시간 이상을 장애인진료에 할당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해야” 안성모 협회장, 문병호 의원 면담서 강조

안성모 협회장은 지난 2월 14일 문병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을 면담하고 의료인 단체에게 자율징계권이나 이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안 협회장은 “치과의사들만 해도 1만2천여명이 넘고 있고 이 같이 많은 의료인들을 관리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치협 등 전문가 단체에게 일부 행정 권한을 정부가 이양한다면 정부도 관리하기가 수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협회장은 “약사의 경우 약사법에 부도덕한 행위를 한 약사들을 자율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미국의사회의 경우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회원들의 면허취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회원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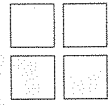
안 협회장은 “올해 내로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 권한이나 이에 준하는 권한을 일부 부여하는 법률안을 추진할 생각”이라

면서 “문 의원도 법안이 추진됐을 때 도와 달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에는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돼 여당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 한국 보건의료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의원이다.

문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치과의사가 모자란 것이 아니냐”는 질문과 관련, 안 협회장은 “치과의사회도 포화 상태다. 2010년부터는 과잉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상황”이라면서 “과거에는 치과대학의 경우도 정원 축소에 일부 반대가 있었으나 현재는 공감하고 있다”고 문 의원의 이해를 구했다.

또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활성화되면 치과의사에게 득이 안 되지 않느냐”는 질의와 관련해서도 안 협회장은 “치협은 국민을 위해 할 것은 하는 단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 교육부 “초등학교 전학년 학교구강검진 의무 실시 확실” ‘교육감 재량...’ 우려에 대한 답변

교육인적자원부가 초등학교의 경우 전학년 학교구강검진의 의무실시가 확실하다고 지난 2월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치협은 기존 매년 실시에서 3년에 한번 검진하는 것으로 개정됐던 학교구강검진과 관련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초등학교에 한해서는 기존대로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합의했다. 단 중·고등학교 학생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에 한해, 구강검사를 실시토록 결정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월 1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칭)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그러나 이번 공포된 학교건강검사규칙 중 제6조 제1항 제3호 ‘구강검사는 초등학교의 학생과 중·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이라고 명시된 조항과 관련 일부 지부에서 “문구상 초등학교 구강 검진도 교육감 재량에 달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 경우 초등학교 구강검진 매년 실시가 불확실하다”고 문제를 제기, 이 부분을 확실히 해 줄 것을 치협에 요구해 왔다. 이에 치협은 교육인적자원부에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해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최근 “초등학교의 경우 전학년 구강검사가 확실하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김상욱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 담당 서기관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내용 중 ‘초등학교의

학생과’ 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초등학교 학생 전체에 대한 구강검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매년 구강 검진은 치협과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약속한 부분”이라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전민용 치무이사도 “이 부분은 교육부와 협의된 내용인 만큼 회원들이 믿고 수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현재 복지부가 학교구강검진을 포함한 근로자 구강검진 등 구강검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과정에 적극참여,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매년 검진 역시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시키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치협은 전체 구강검진과 관련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 ‘구강건강검진 관리체계’에 대한 연구운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다.

한편 현재 구강검사는 초등학교 1, 4학년 등에 대한 3년에 한번 의무 검사 외에 시력검사, 결핵검사, 소변검사와 함께 ‘별도검사’로 분류돼 ‘시도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매년 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항목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한해서는 시도교육감의 재량에 상관없이 매년 구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 안성모 협회장 국시원 이사장에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선임

안성모 협회장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문식·이하 국시원)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국시원은 지난 2월 21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3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김문식 원장 등 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이사 만장일치로 안 협회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사회에서는 현 이사장인 김의숙 대한간호협회장의 단체장 임기만료에 따라 후임 이사장을 선출했으며, 임기는 2007년 5월 7일까지다.

이사회에서는 또 단체장 임기만료로 이사직을 사직한 양일

선 전 대한영양사협회장에 대한 후임이사로 박동경 현 대한영양사협회장을 선출했다.

안성모 협회장은 “20여개의 보건의료의약계 전체를 포함하는 직업군이 총망라된 국시원에서 대표 자리를 맡아 국가시험에 관한 일을 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시원은 의사국시원이 확대 개편돼 치과 의사 뿐만 아니라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등 국내 모든 보건의료인 20개 직종의 시험을 관장하기 위해 지난 98년 6월 3일 개원한 재단법인이다.